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2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 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현행 복무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안 제3조의2).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안 제16조의2).

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2월)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안 제13조, 제16조의2 및 제18조).

라. 해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III. 검토의견

1. 관계법령 검토

먼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67조에서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규정을 두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위법규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나 연간일수,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사항 등의 공통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6. 25. 현재 자치구별 복무조례개정 현황을 보면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서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14개구, 상임위 수정의결 1개구, 상임위 심사보류 1개구, 상임위 회부중 구청장의 철회요구 1개구이며, 나머지 8개구는 2004. 7. 2. 이내에 처리예정 중에 있는 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고,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표준안 일부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근무시간 조정 배경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40시간 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2004. 5. 19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2004. 7.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 개정내용

1) 안 제3조의2.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비밀엄수의 의무규정을 포괄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강화한 내용으로서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개정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각 자치단체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이 종전 동절기인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1시간 근무시간을 연장한 것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안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안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현행 23일에서 21일로 2일 단축되는 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의2 제2항에서 규칙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규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예를 들면 “월에 4주가 있는 달의 경우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은 전원근무하고, 둘째주와 넷째주 토요일은 전원휴무를 실시하되, 5주가 있는 달의 경우 다섯째주 토요일은 전원근무를 실시한다.” 라는 규정을 둘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안 제18조제1항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 23일에서 21일로 2일 단축하는 사항은 그 시행일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 많이 남아 있고,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동조문을 이번에 개정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두기 위해서는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전·후 문맥으로 보아 적절하다고 봅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홍보

2004년 7월 1일부터 근무시간 및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는 것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항이나, 주민생활(민원해결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역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8)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현황

(2004. 6. 25현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구
중 로 구	○	×	7.1		7.2		
중 구	○	×	6.28		7.8		
용 산 구	○	×	6.30		7.8		
성 동 구	○	×	6.24	구청철회			상임위 상정되었으나 구청에서 철회
판 진 구	○	×	6.23	원안가결	6.30		노조요구안 차후 개정시 검토
동대문구	○	×	5.28	원안가결	6.2	원안가결	공포예정
중 랑 구	○	×	6.24	원안가결	7.1		
성 북 구	○	×		원안가결	6.28		
강 북 구	○	×	6.16	원안가결	6.18	원안가결	
도 봉 구	○	×	6.25	원안가결	6.28		
노 원 구	○	×		원안가결	6.24	원안가결	
은 평 구	○	×		원안가결		원안가결	6.30 공포예정
서대문구	○	×	6.25	수정외결	6.29		비밀엄수조항 삭제 동절기연장근무 삭제 연가일수축소 삭제
마 포 구	○	×	7.2		7.8		
양 천 구	○	×		원안가결	6.5	원안가결	6.25 공포됨
강 서 구	○	×		원안가결		원안가결	6.29 공포예정
구 로 구	○	×	6.24	심사보류			계속심사(서울시)
금 천 구	○	×		원안가결	6.24	원안가결	
영동포구	○	×		원안가결	6.18	원안가결	
동 작 구	○	×		원안가결		원안가결	공포완료
판 악 구	○	×	7.1				의회상정중
서 초 구	○	×	6.25	원안가결	6.30		
강 남 구	○	×	7.1		7.2		
송 파 구	○	×	6.28		7.5		
강 동 구	×	○	7.11		7.16		구청 조례심의회 수 정외결(동절기 근무 시간 연장 수후개정)